

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㉠

2022년 2월 3일

국 무 총 리 김 부겸

국 무 위 원
법 무 부 장 관 박 범 계

● 법률 제18799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제1항 및 제4항 중 “提示하여야”를 각각 “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”로 한다.

제118조의 제목 중 “提示”를 “제시와 사본교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한다”를 “하고,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·수색 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·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